

의안번호	2215058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5.12.22.
추 계 번호	25B679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900만원 (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79	—	-79	79	—	79	16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시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비용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임
- － (용역비용) 2024년 시행한 연구용역(7,900만원)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용역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현황

연구용역명	시행연도	시행기관	연구용역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4	(사)한국행정학회	7,9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 (용역주기)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은 2027년(2024년+3년)과 2030년(2027년+3년)에 시행하며, 기준선인 현행법에 근거한 연구용역은 5년 후인 2029년(2024년+5년)에 시행

[표 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준선(현행, A)	—	—	79	—	—	79
개정안(B)	79	—	—	79	—	158
추가재정소요(B-A)	79	—	-79	79	—	79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시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2024년 기준 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